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4
----------	-----

제출연월일 : 2004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총무과】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농산사업소장에게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소내 전보권’ 사무를 위임

【환경과】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관리에 관한 사무’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

【교통과】

- “주차장법”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의 사무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권한의 사무로 변경되어 이를 권한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등의 사무가 시장·군수에서 도지사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의 지속성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업무’의 사무가 도지사에서 건설교통부장관권한으로 변경되어 이를 삭제함.

【도로과】

- 원거리 주민편익제고를 위하여 ‘도유 행정재산(도로)의 관리 및 사용허가’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

3. 의안전문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4항 및 제5조중 “축산위생연구소장” 다음에 “농산사업소장”을 각각 삽입한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환경과 소관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과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 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나.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등의 개선명령 다. 보고 및 검사 라. 과태료부과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 공기질관리법 제5조 동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6조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교통과 소관 제11호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모두 삭제하고,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 하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교통과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신고(신규·변경)처리 나.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 다.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처리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동법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도로과 소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 법령
도로과	6	○ 도유 행정재산(도로)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조, 제11조 및 제12조

별표 4의 권한위임사무중 총무과 소관 제8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종전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대상실과	일련 번호	사 무 명	위임대상기관	근거법령
총무과	8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농산사업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환경과	1~29	<생략> <신설>		환경과	1~29 30	<현행과 같음>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 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나.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등의 개선명령 다. 보고 및 검사 라. 과태료부과	다중이용시설등 의실내공기질관 리법 제5조 동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6조
교통과	11	○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기계식주차장의 검사 나. 기계식주차장 검사필증 및 사용금지표지의 교부 <신설>	주차장법 제19 조의9제2항 동법 제19조의 10제1항	교통과	11	<삭제> ○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신고(신규·변경) 처리 나.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 허가 다. 임대 자가용 화물 자동차반환신고처리 <삭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동법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
	12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등록 등 나. 운송약관의 신고 등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다. 개선명령(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제3조 동법 제7조 동법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교통과		라.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동법 제14조				
		마. 사업의 상속신고 등	동법 제15조				
		바. 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동법 제17조				
		사. 자동차사용의 정지	동법 제18조				
		아.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계획의 수립 시행(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동법 제19조				
		자. 청문(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동법 제20조				
		차. 운수사업의 실태조사 등	동법 제32조				
		카. 보고·검사 또는 질문	동법 제44조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동법 제50조				
		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6조 및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에 의거 협회에 위탁한 사무를 협회의 해산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					
		·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신고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				
		· 사업의 휴지 및 폐지신고	동법 제16조 제24조				
		· 등록사항변경신고(다만 동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 또는 상속신고를포함하는 등록사항변경신고를 제외)	동법 제21조제2항				
	·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연수교육	동법 제28조					
	·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사업 등에 관한 보고서 또는 서류의 제출요청	동법 제44조 제1항					
13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 등	동법 제21조		13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도로과	1~5	<생략> <신설>			1~5	<현행과 같음>	
					6	○ 도유 행정재산(도로)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충청북도공유 재산관리조례 제3조 제11조 및 제12조

【별표 4】

현 행					개 정 안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사 무 명	위임대상 기 관	근거법령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사 무 명	위임대상 기 관	근거법령
총무과	1~7	(생 략) <신 설>			총무과	1~7	(현행과 같음)		
	8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 보권	청남대관리 사업소장	지방공무원 법 제63조제 2항		8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농 산 사업소장	지방공무원 법 제63조제 2항
						9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청남대관리 사업소장	상동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명령) 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그 구조 및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된 경우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채

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2.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
 - 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제8조(개선명령기간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개선명령 사유
- 2. 개선계획서의 제출
- 3. 개선기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선명령을 받은 사유 및 그 대책
2.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
3. 개선완료예정일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개선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등) ①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당해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1. 사용검사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완료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③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연기절차, 검사시기 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10(검사필증의 교부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검사필증을,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운송약관) ①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개선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4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수인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후 6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폐지신고) ①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 기타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3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자동차사용의 정지) ①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과징금의 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①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3조제7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사업자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의2(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규정) 제4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동조제1호를 제외한다), 제8조의5, 제10조(동조제5항·제8항 및 제10항을 제외한다), 제11조, 제12조(동조제4호를 제외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운송약관"을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제28조(경영자연수교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영을 담당하는 任眞(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경영자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실태조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수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재산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화물자

동차"라 한다)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당해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보고·검사)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당해 사업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제5항·제21조제4항 또는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 소속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기재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관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5조(권한의 위임) ③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2.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변경허가
3. 법 제3조제7항(법 제2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4. 법 제7조(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7. 법 제12조(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8. 법 제14조(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9. 법 제15조(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신고
10.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사업정지 처분 및 감차조치명령
1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12. 법 제19조(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의 수립·시행
13. 법 제20조(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청문
16. 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17.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18.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경영실태조사 및 재무관리상태진단(운송가맹사업자와 관련된 보고·경영실태조사 및 재무관리상태진단을 제외한다)
2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2조(임대허가신청) ③자가용화물자동차의 임대인은 화물자동차의 반환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관리사무위임)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후 사용·수익허가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주어야 한다.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삭제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